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및
지구단위계획(변경)결정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7-260호(2007.7.30.)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, 제2009-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6호(2024.6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10일
서울특별시장

I.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

1.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(변경없음)

구분	지 구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세운재정비 촉진지구	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	439,356.4	-	439,356.4	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6-365호 (2006.10.26.)

- 이하여백 -

표.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
1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	기정		변경			비 고
		면적(m²)	비율(%)	면적(m²)	비율(%)	증감(m²)	
합 계		439,356.4	100.0	439,356.4	100.0	-	-
택지 (획지)	소 계	285,565.9	65.0	285,757.3	65.0	증) 191.4	-
	복합개발용지	269,004.8	61.2	269,196.2	61.2	증) 191.4	충무로변 3m 확폭 삭제
	남산자이	5,216.5	1.2	5,216.5	1.2	-	-
	국도호텔	1,620.5	0.4	1,620.5	0.4	-	-
	중앙테크플라자	-	-	-	-	-	존치정비구역
	명보아트홀	-	-	-	-	-	존치정비구역
	매일경제신문	-	-	-	-	-	존치정비구역
	세운상가군	9,724.1	2.2	9,724.1	2.2	-	-
기반 시설	소계	153,790.5	35.0	153,599.1	35.0	감) 191.4	-
	공공청사	7,600.0	1.7	7,600.0	1.7	-	중구청
	학교시설	13,055.1	3.0	13,055.1	3.0	-	덕수중학교
	하 천	8,423.4	1.9	8,423.4	1.9	-	청계천
	공 원	30,165.5	6.9	30,165.5	6.9	-	-
	녹 지	1,325.1	0.3	1,325.1	0.3	-	2 개소
	주차장	1,198.7	0.3	1,198.7	0.3	-	1 개소
	공공공지	1,328.4	0.3	1,328.4	0.3	-	3 개소
	공공용지	4,100.3	0.9	4,100.3	0.9	-	4 개소
	도 로	86,594.0	19.7	86,402.6	19.7	감) 191.4	충무로변 3m 확폭 삭제

※ 복합개발용지 면적은 사업완료구역 포함하여 산정

※ 공공용지 : 공공임대산업시설로 활용 후 필요시 유연한 용도 전환

※ 도로면적 : 청계천로, 을지로, 마른내로 포함

2. 인구·주택수용계획(변경없음)

- 19,117명, 11,550세대 (목표인구 기준 : 완료구역 제외)

*상기 인구 및 주택계획은 추후 구역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3.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)

가. 도로(변경)

- 6-1-1구역 충무로변 도로계획 조정(25→22m)에 따른 기반시설 면적 변경

나. 주차장(변경없음)

다. 공원 및 녹지(변경없음)

라. 공공공지(변경없음)

마. 학교(변경없음)

바. 공공청사(변경없음)

사. 기타(변경없음)

4. 공원·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
5. 교통계획(변경)

※ 제 5장 교통성검토서 참고

6. 경관계획(변경없음)

7. 광고물관리계획,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(변경없음)

8.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사업의 종류	비고
변경 (신설)	세운 6-1-1	중구 을지로3가 291-45 일원	5,286.6	재개발사업	촉진구역 전환

※ 현황도로 및 필지 기준으로 구역계 조정

※ 상기 구역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금회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9.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(변경)

구 분	구역명	용적률(%)			건폐율 (%)	높이(m)		비고
		기준	허용	상한		기준	최고	
신설	세운 6-1-1	600 이하	1,000 이하	1,522 이하	60 이하	90	개방형녹지, 공공성 확보,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	-

※ 금회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※ 「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문)」 변경사항 반영

10.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(변경)

구분	구역명	사업시행 면적 (㎡)	획지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등 면적(㎡)		기존 정비기반시설 (㎡)	순부담률(%)			비고	
				정비기반시설			정비기반시설 (토지)	기반시설 등 (건축물 등)	합계		
				토지	공원						
신설	세운 6-1-1	7,040.9	5,214.3	72.3	6.9	1,747.4	79.2	-	25.1	25.1	-

※ 상가군 매입은 향후 '기반시설 설치비용 현금예치에 관한 협약' 을 통해 정비기반시설(공원) 조성에 활용

※ 순부담 비율 = (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- 기존 정비기반시설 면적) ÷ [(획지 +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) - 기존 정비기반시설]

$$= (79.2 + 1,747.4 - 79.2) \div (7,040.9 - 79.2) = 25.1\%$$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되며, 그 외는 유상매입 대상임

※ 금회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※ 대상지 부지가액은 개략적 금액으로 「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에 따라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함

11.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
12.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13. 촉진구역별 사업계획(변경)

가. 6-1-1 재정비촉진구역 : 신설

■ 촉진구역 결정조서

구분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6-1-1구역	중구 을지로3가 291-45 일원	-	증) 5,286.6	5,286.6	-

나. 정비구역의 지정

1) 정비사업의 명칭 : 세운 6-1-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

2)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세운6-1-1구역	중구 을지로3가 291-45 일원	5,139.5	감) 5,139.5	-	존치정비구역
변경(신설)	세운6-1-1구역	중구 을지로3가 291-45 일원	-	증) 5,286.6	5,286.6	촉진구역

3)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

시행방법	시행 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촉진계획(변경) 고시 후 4년 이내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	해당 사항 없음	-

4) 정비구역을 분할,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: 해당없음

5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획지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증감	
6-1-1구역	획지1	4,948.1	5,214.3	증) 266.2	-

※ 현황도로 및 필지 기준으로 구역계 조정

다. 정비계획 결정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계획

(1)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5,286.6	-	5,286.6	100.0	-
일반상업지역	-	증)5,214.3	5,214.3	98.6	-
중심상업지역	5,286.6	감)5,214.3	72.3	1.4	도로

-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결정(변경) 사유
		기정	변경		
-	중구 을지로3가 291-45일대	일반상업지역	중심상업지역	5,214.3	•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(22)에 따른 녹지생태공간 유도 및 서울도심기본계획(23)에 따른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고밀·복합 개발 통한 을지로 도심업무중심축 기능 강화

(2) 용도지구(변경없음)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증감	변경		
합 계		5,139.5	증) 147.1	5,286.6	100.0	-
획 지		4,948.1	증) 266.2	5,214.3	98.6	-
정비기반시설	소 계	191.4	감) 119.1	72.3	1.4	-
	도로	191.4	감) 119.1	72.3	1.4	-

3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(1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(가) 교통시설

㉠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2~25 (3m)	집산 도로	1,870 (982)	와룡동 5-14	필동1가 40	일반 도로	-	서울시공고 제2001-646호 (01.8.6.)	2,6-1,6-2구역변 3m 도로확폭
변경	중로	1	1	22~25	집산 도로	1,870 (982)	와룡동 5-14	필동1가 40	일반 도로	-	서울시공고 제2001-646호 (01.8.6.)	총무로변 도로계획 조정

※ 금회 촉진계획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※ ()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

-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1	중로1-1	• 충무로변 도로계획 조정 (B=25→22m, 3m 축소)	• 충무로변 도로 폭원 축소

■ 지하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3	A	4~26 (4~26)	특수 도로	2,780 (464)	시청역 (을지로 3가역)	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(을지로 4가역)	지하 공공 보도 시설	-	'83.9.16.	-시청광장~을지로 지하상가 (을지스타몰 3구역) 대로2-3 중복결정(A=8,445.3m²) -중로3-1 중복결정 (A=83.7m²) -입체적 결정(A=286.6m²)
변경	대로	3	A	4~26 (4~26)	특수 도로	2,780 (464)	시청역 (을지로 3가역)	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(을지로 4가역)	지하 공공 보도 시설	-	'83.9.16.	-시청광장~을지로지하상가 (을지스타몰 3구역) 대로2-3 중복결정(A=8,798.8m²) -중로3-1 중복결정 (A=83.7m²) -입체적 결정(A=286.6m²)

※ 금회 추진계획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- 변경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A	대로 3-A	• 시청광장~을지로 지하상가대로2-3 중복결정 면적 증가 -A=8,445.3m²→8,798.8m²(증)353.5m²)	• 지하철2호선, 을지로지하상가 등 주변 시설과 연결되는 지하공간 개선/확대

㉠ 철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m²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903.56 (595.8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994.06 (1.089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축진지구 내 면적임

■ 입체적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입체적 결정규모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구분	규모		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면적(m ²)	329.6	서울시 고시 제2023-540호 (‘23.12.07.)	을지로3가역 6번 출입구
					길이(m)	43.3		
					폭(m)	18.9		
					높이(m)	10.3~29.4		
세부 사항	• 입체적 결정범위(해수면 기준) - 지상부 : A=152.0m ² , H=24.7m~29.4m - 지하부 : A=219.4m ² , H=10.3m~24.7m							
신설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면적(m ²)	343	서울시 고시 제2023-540호 (‘23.12.07.)	을지로3가역 7번 출입구
					길이(m)	28.6		
					폭(m)	8.1, 12.7		
					높이(m)	11~29.6		
세부 사항	• 입체적 결정범위(해수면 기준) - 지상부 : A=295.5m ² , H=25.0m~29.6m - 지하부 : A=281.4m ² , H=11.0m~25.0m							

-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- 도시철도 시설 범위 : 493.2m² - 입체적 결정 범위 변경 - 면적 : 343m² - 길이 : 28.6m - 폭 : 8.1m, 12.7m - 높이 : 11~29.6m	을지로3가역 7번 출입구 대지 내 이설을 위한 입체적 결정

(2)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

구분	사업시행 면적 (㎡)	획지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등(㎡)			기존 정비 기반시설 (㎡)	순부담면적 (㎡)	순부담율(%)		
			정비기반시설		기반시설 등 (건축물 등)			기반시설 (토지)	추가 부담 (건축물 등)	합계
			토지	공원						
신설	7,040.9	5,214.3	72.3	6.9	1,747.4	79.2	1,747.4	-	25.1	25.1

- ※ 상가군 매입은 향후 '기반시설 설치비용 현금예치에 관한 협약' 을 통해 정비기반시설(공원) 조성에 활용
- ※ 순부담 비율 = (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- 기존 정비기반시설 면적) ÷ [(획지 +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) - 기존 정비기반시설] = (79.2 + 1,747.4 - 79.2) ÷ (7,040.9 - 79.2) = 25.1%
-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되며, 그 외는 유상매입 대상임
- ※ 대상지 부지가액은 개략적 금액으로 「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에 따라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함

4)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해당없음

6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 (m²)	명칭	면적 (m²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주	
변경	세운 6-1-1	5,286.6	-	5,214.3	을지로3가 291-45 일대	39	-	-	39	-	-

7) 건축물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(m)	비 고
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					
기정	세운 6-1-1	5,139.5	-	4,948.1	을지로3가 291-45 일대	기본계획상 도심복합용도지역 주용도	50이하	기준 600 허용 800 상한 α	90+α	-
변경	세운 6-1-1	5,286.6	-	5,214.3	을지로3가 291-45 일대	업무시설 (오피스 오피스텔)	60이하	기준 600 허용 1,000 상한 1,522	186 이하	-
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	기정	· 「2030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용적률에 따라 기준600/허용800/상한α 적용								
	변경	· 용적률 : 1,522.0%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: 600.0% ② 허용용적률 : 400.0%								
		목 적		인센티브 완화 요건				산정방식	완화량	
		녹지생태공간		개방형녹지 30% 초과 설치시				정률부여	200%	
		지구통합관리운영		지구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협약 완료시				정량부여	20%	
		상가세입자 대책		대체영업장확보 및 운영시(재수용비용 20%이상)				정률부여	30%	
		도시경제활성화용도		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시(임무 1,500㎡제외)				정량부여	21.8%	
		공익시설		창조교류플랫폼 도입시(임무)				정률부여	37.2%	
		신재생에너지		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%이상 추가 설치시				정량부여	20%	
		가로지장물 이전/지중화		지하철 출입구 이전시				정률부여	78.9%	
		계					407.9%			
※ "26년 9월 18일 이후부터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항목에서 제외 예정임에 따라(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'26.8.5.) 추후 변경된 기준 반영하여 확정함."										
③ 상한용적률 : 522.0%										
		구 분		인센티브 산식					완화량	
		상가군 매입 건축물 부담에 따른 인센티브		· 허용용적률 × (1.2 × α건축물) = 1,000% × (1.2 × 0.2723) = 326.8% ※ α건축물 = 건축물 환산부지1,420.0㎡ ÷ 획지면적5,214.3㎡=0.2723					326.8%	
		지하통합개발 건축물 부담에 따른 인센티브		· 허용용적률 × (1.2 × α건축물) = 1,000% × (1.2 × 0.0627) = 75.3% ※ α건축물 = 건축물 환산부지327.4㎡ ÷ 획지면적5,214.3㎡=0.0627					75.3%	
		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		· 허용용적률 × 12%(4등급)					120.0%	
				계					522.1%	
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	기정	· 「2030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높이계획에 따라 기준높이 90m 적용								
	변경	· 개발가능높이 : ① + ② + ③ = 186.0m ① 기준높이 : 90m ② 개방형녹지 30% 초과확보에 따른 완화 : 78m - 완화높이 : [적정건폐율50% × (기준높이+20m) / (80%-개방형녹지율)] - 기준높이 - 개방형녹지계획 : 2,470.4㎡(47.38%) ▶ 높이완화 : [50% × (90m + 20m) / (80% - 47.38%)] - 90m = 78m ③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 : 18m - 완화높이 : 기준높이 × (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/ 당초의 대지면적) ▶ 높이완화 : 90m×(1,420㎡ / 6,971.3㎡)=18m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기정	· 건축한계선 - 을지로, 충무로변: 5m (단, 개방형 녹지 부분 제외)								
	변경	· 건축한계선 - 을지로, 충무로변: 5m								
개방형 녹지계획	변경 없음	· 개방형녹지 40%이상 확보(중심상업지역 상향시) · 일반에게 개방하고, 휴식과 여가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공간으로 조성								
기타사항에 관한 계획	변경 없음	· 차량진출입 불허 : 을지로3가 사거리 각각부								

8)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
구분	내용	
추정 비례율	·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수입-총지출) ÷ 종전자산총액 × 100% · 추정비례율 : 146.30% ((1조 1,777억-7,414억) ÷ 2,982억 × 100%)	
	구분	금액(천원)
	총수입	오피스텔 645,480,550
		오피스 489,911,244
		판매시설 42,366,275
		합계(A) 1,177,758,069
	총지출(B) 741,432,818	
	종전자산 총액(C) 298,246,920	
	추정비례율((A-B)÷C) 146.30%	
추정 분담금	·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=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- (종전자산 추정액 × 관리가액 비율) · 분양가액 :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설계 확정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·종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	

※ 상기 금액은 추산액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※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수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종전자산, 사업비, 종후자산의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기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

9)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0)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: 해당없음

11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12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환경 보전	녹지 계획	· 지상층과 옥상층에 녹지를 조성하여 최대한 비오톱의 보호 및 복원 및 생태면적률 20%이상 확보 ·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	-
	녹색교통 활성화 유도	·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으로 보행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	-
	저탄소 친환경 단지 조성	· 운영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및 에너지절약건축자재사용, 자연채광 등을 최대한 활용, 에너지 손실 줄이도록 계획 · 복층유리 및 에너지인증마크를 획득한 자재 등을 적용하여 결로 및 기타 열손실을 방지하여 에너지사용량 감소 ·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을 위해 주거시설 옥탑에 태양광 발전시설(PV), 비주거시설의 건축물 입면에 태양광 발전시설(BIPV)을 설치	-
재난 방지	수재해	· 건물내 빗물이용시설(우수조)을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방지	-
	화재	·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	-

13) 환경성 검토결과

검토항목	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에의 반영사항
자연 생태 환경	가. 비오톱	비오톱보전 등급 향상	○	- 현존식생도 : 시가지지역 도로 - 비오톱유형 :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, 교통시설 비오톱 - 비오톱유형평가도 : 3등급, 4등급, 도로 - 개별비오톱평가도 : 도로, 평가제외 - 녹지공간 확충 필요	조경녹지 조성 및 수목식재 등의 계획
	나. 생태 네트워크	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	○	- 자연생태적 가치성은 없으나 조경계획으로 개선됨 - 지리적으로 거시적 녹지축의 징검다리 역할 도모	사업대상지 내 조경녹지 조성 등을 통해 공원 녹지공간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
생 활 환 경	토 지 환 경	다. 토지이용	○	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	장래 남북녹지축을 조성하면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유도
		라. 토양	○	- 중구의 경우 토양측정망 2개소가 위치하고있으며,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음 - 공사시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	- 공사시 건설장비 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서 정비 - 불가피하게 폐유 보관시 폐유보관소 설치 후 위탁처리
		마. 지형지질	○	절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량의 발생 및 이동이 예상됨	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임
	물 환 경	바. 물순환 (수리수문)	○	- 강우시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이 어려움 - 녹지조성 투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물순환공간 확보 필요	효율적인 물순환을 위해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21.41%를 확보함
	기 후 대 기 환 경	사. 바람 열	○	- 풍속평균 2.3m/s - 바람의 영향이 국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	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바람길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
		야. 대기질 (미세먼지 및 온실가스)	○	- 공사시 공사장비의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(PM-2.5, PM-10, NO₂)발생 -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	- 공사시 : 먼지저감 대책 실행 - 운영시 :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,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(정화수종 선택)
	기 타	자. 친환경적 자원순환	○	- 공사시 건설 및 생활폐기물 -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	- 공사시 : 건설폐기물 분리수거, 폐유보관소 설치 등을 통한 폐기물 저감 - 운영시 :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제고
		차. 소음진동	○	- 공사시 소음 및 진동발생 (80미터 이내 영향권) -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소음 발생	- 가설방음판넬 설치,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- 차음성능 우수한 창호 설치 및 방음방진 설비 계획 수립
		카. 경 관	○	사업지구 주변으로는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위치하고 있음	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
		타. 휴식 및 여가공간	○	- 관내 공원 76개소 - 사업지구 인근 공원 분포 저조	사업지구 내 개방형녹지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
		파. 보행 친화공간	○	정비되지 않은 골목길 조성으로 원활한 통행 어려움	연속적 녹지계획 및 보행활성화가 예상됨
		하. 일조장해	○	- 사업구역 주변에 층고 낮은 건축물이 존재 상호 간섭함 - 본 계획건축물로 인한 일조침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	-

14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15)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

구분	지점	교통처리계획
주변가로 및 교차로	-	◦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- 『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(변경심의), 2022. 3.』 - 『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2,3구역 교통영향평가, 2024. 6.』 - 『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,9,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, 2024. 12.』 - 『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세운6-1-4구역) 변경 결정 교통성검토, 2025. 11.』
진출입 동선	㉠ ㉡ - -	◦ 6-1구역 개발완료시 을지로16길 교통처리계획 수립·제시 ※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예정(안) 반영 ◦ 을지로16길 도로확장 및 운영계획(일방통행) 수립 ◦ 을지로16길상 진출입구 설치(1개소) ◦ 진출입구 및 도로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(R=6.0m)
대중교통	㉢	◦ 을지로3가역 7번 출구 및 주변 환기구 이전 설치
보행	-	◦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(2개소)
	㉣	◦ 개방형 녹지 공간을 활용한 임시도로(보행로) 설치
	㉤	◦ 사업지 내부 도로폐쇄에 따른 서측 충무로변 보도 채움
자전거	-	◦ 사업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주차공간 영역 표시 - 법정주차대수의 20% 이상 확보 - 편의시설(CCTV, 안내표지, 공기주입기, 이용안내문, 위치안내도 등) 설치
주차 시설	-	◦ 법정주차대수 : 최대 772대(주거시설 398대, 비주거시설 374대) ◦ 주차수요 : 626대(주거시설 346대, 비주거시설 280대) ◦ 계획주차대수 : 538대(주거시설 398대, 비주거시설 140대) - 법정주차대수의 69.69% 확보 - 주차수요의 85.94% 확보 - 확장형 주차면 : 계획주차대수의 30% 이상 확보 - 경형 주차면 : 계획주차대수의 10% 이하 확보 - 장애인 주차면 : 법정주차대수의 3% 이상 확보 - 가족배려 주차면 : 계획주차대수의 10% 이상 확보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(충전시설 포함) : 계획주차대수의 5% 이상 확보 ※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여 비주거시설 주차대수는 법정최고한도 이하 계획 -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램프 전면부 차량경고등 설치 - 주차램프 전면 및 주차장 내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 ㉦ ◦ 서측 충무로 순찰차 전용주차면 및 노상주차면 삭제 건의(관계기관 협의 후 시행)
교통안전 및 기타	-	◦ 주변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설치(관계기관 협의 후 시행)
	-	◦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신설되는 보도,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시 점자유도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

※ 추후 상세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음

※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

16)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

착공전	착공 ~ 공사완료	범죄예방설계 적용
· 펜스 설치 및 유지·관리 · 1일 오전·오후 1회 우범 지역 순찰 ·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시설	· 건설산업기본법, 건설기술진흥법, 건축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·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	· 주요 지점에 안내판 설치를 통해 보행자 인지도 제고 · 자체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노후화를 방지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 · 주요 교차로 및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CCTV 설치

17) 세입자 대책

(1) 세입자대책 사전협의 및 이행

-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등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
-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추후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시 확정

(2) 대체영업장 확보 및 운영

- 기존 상가세입자의 영업공백을 막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대체 영업장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입점 지원
- 구체적인 이행 방법 및 이행 시기는 추후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시 확정

18) 구역 내 옛길, 옛물길,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·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

(1) 구역내 옛길 현황

- 동측변 남북방향으로 을지로와 연결하는 을지로16길(청계천하랑교터남북길) 1개소
- 을지로16길을 통해 연접구역(6-1-2, 6-1-4, 6-1-5)내 접근 이용, 대상지 개발시 연접 필지 접근을 위한 임시도로 필요

(2) 임시도로 운영 및 복구 계획

- 임시도로 해당구간을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(지역권 설정) 등에 명시하여, 일반인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이행 담보가 가능토록 관리·운영
 - 지상권 설정
 - 위치 및 범위 : 서울시 중구 을지로16길 해당구간 통행을 위한 폭 3m 범위
 - 설정기간 : 인접구역 개발시 까지로 한정
 - 건축물대장 : 특기사항으로 임시도로 설치 기재
- 임시도로 개설시, 임시도로 복구비용을 해당 자치구에 예치

14. 존지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(변경)

가. 존치정비구역(변경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1구역	1-1	종로구 장사동 116-4	5,801.2	-	5,801.2	-
	1-2	중구 산림동 207-1	3,452.7	-	3,452.7	
	1-3	중구 산림동 207-2	6,139.6	-	6,139.6	
	1-4	중구 인현동1가 310-68 일대	4,698.7	-	-	
	1-6	중구 충무로4가 120-3	13,752.8	-	13,752.8	
2구역	2	종로구 장사동 67일대	38,892.2	-	38,892.2	-
5구역	5-4	중구 주교동 123-1 일대	15,807.2	-	15,807.2	
	5-5	중구 을지로4가 61 일대	13,684.2	-	13,684.2	
6-1구역	6-1-1	중구 을지로3가 291-45 일대	5,139.5	감) 5,139.5	-	축진구역 변경
	6-1-2	중구 을지로3가 272-4 일대	9,208.1	감) 147.1	9,061.0	-
	6-1-5	중구 인현동1가 101-3 일대	18,592.8	-	18,592.8	-
6-2구역	6-2-1	중구 인현동1가 111-6 일대	6,271.7	-	6,271.7	
	6-2-2	중구 인현동2가 190-1 일대	24,319.9	-	24,319.9	
	6-2-3	중구 충무로3가 33-1 일대	2,939.8	-	2,939.8	
	6-2-4	중구 필동1가 51-5 일대	14,828.7	-	14,828.7	
	6-2-5	중구 충무로4가 125-3 일대	11,388.9	-	11,388.9	
6-3구역	6-3-5	중구 예관동 17-3 일대	984.5	-	984.5	-
	6-3-6	중구 예관동 43-1 일대	1,308.7	-	1,308.7	
6-4구역	6-4-1	중구 인현동2가 181-22 일대	23,598.3	-	23,598.3	-
	6-4-2	중구 충무로4가 48-1 일대	2,795.8	-	2,795.8	

나. 존치관리구역(변경없음)

다. 존치지역 관리계획(변경없음)

15. 지구단위계획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■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6-1-1구역	중구 을지로3가 291-45 일원	-	증) 5,286.6	5,286.6	

- 변경 사유서

구분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신설	중구 을지로3가 291-45 일원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면적 5,286.6m ²	• 세운6-1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

(1)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 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5,286.6	-	5,286.6	100.0	-
일반상업지역	-	증)5,214.3	5,214.3	98.6	-
중심상업지역	5,286.6	감)5,214.3	72.3	1.4	도로

-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	결정(변경) 사유
		기정	변경		
-	중구 을지로3가 291-45일대	일반상업지역	중심상업지역	5,214.3	•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('22)에 따른 녹지생태공간 유도 및 서울도심기본 계획('23)에 따른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고밀·복합개발 통한 을지로 도심업무중심축 기능 강화

(2) 용도지구(변경없음)

2)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(1) 교통시설

㉠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2~25 (3m)	집산 도로	1,870 (982)	와룡동 5-14	필동1가 40	일반 도로	-	서울시공고 제2001-646호 (‘01.8.6.)	2,6-1,6-2구역변 3m 도로확폭
변경	중로	1	1	22~25	집산 도로	1,870 (982)	와룡동 5-14	필동1가 40	일반 도로	-	서울시공고 제2001-646호 (‘01.8.6.)	충무로변 도로계획 조정

※ 금회 촉진계획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※ ()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

-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1	중로1-1	• 충무로변 도로계획 조정 (B=25→22m, 3m 축소)	• 충무로변 도로 폭원 축소

■ 지하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3	A	4~26 (4~26)	특수 도로	2,780 (464)	시청역 (을지로 3가역)	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(을지로 4가역)	지하 공공 보도 시설	-	'83.9.16.	-시청광장~을지로 지하상가 (을지스타몰 3구역) 대로2-3 중복결정(A=8,445.3m²) -중로3-1 중복결정 (A=83.7m²) -입체적 결정(A=286.6m²)
변경	대로	3	A	4~26 (4~26)	특수 도로	2,780 (464)	시청역 (을지로 3가역)	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(을지로 4가역)	지하 공공 보도 시설	-	'83.9.16.	-시청광장~을지로지하상가 (을지스타몰 3구역) 대로2-3 중복결정(A=8,798.8m²) -중로3-1 중복결정 (A=83.7m²) -입체적 결정(A=286.6m²) (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)

※ 금회 촉진계획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- 변경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A	대로 3-A	• 시청광장~을지로 지하상가대로2-3 중복결정 면적 증가 -A=8,445.3m²→8,798.8m²(증)353.5m²)	• 지하철2호선, 을지로지하상가 등 주변 시설과 연결되는 지하공간 개선/확대

㉠ 철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903.56 (595.8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255.86 (948.1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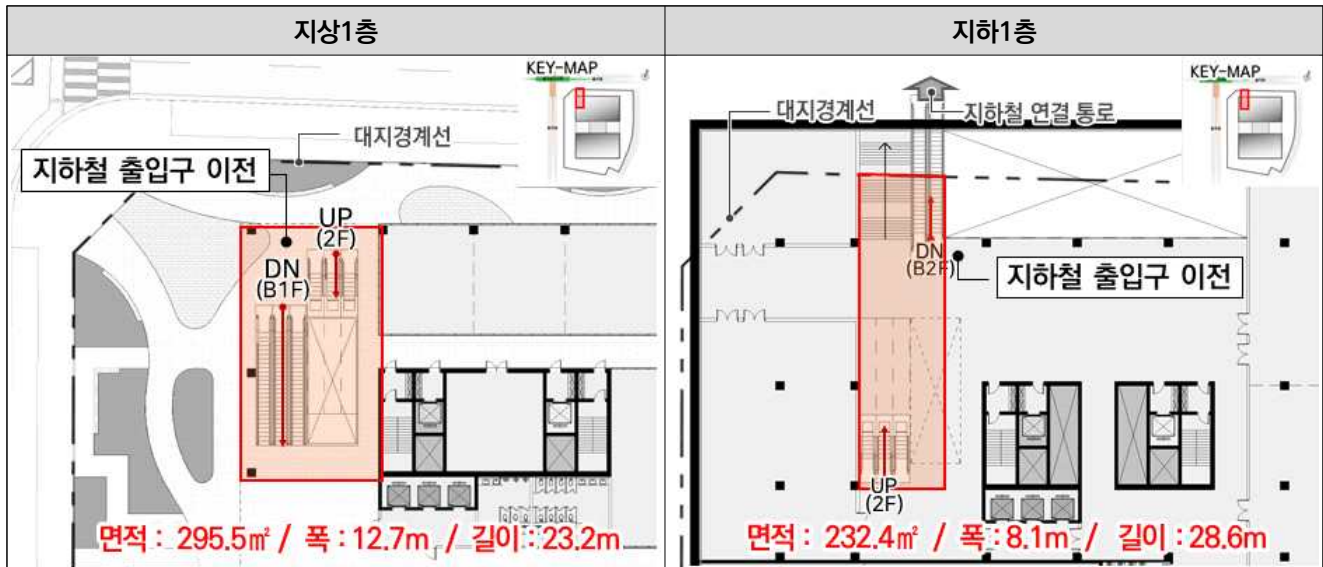
■ 입체적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입체적 결정규모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구분	규모		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면적(m²)	329.6	서울시 고시 제2023-540호 (‘23.12.07.)	을지로3가역 6번 출입구
					길이(m)	43.3		
					폭(m)	18.9		
					높이(m)	10.3~29.4		
세부 사항	• 입체적 결정범위(해수면 기준) - 지상부 : A=152.0m², H=24.7m~29.4m - 지하부 : A=219.4m², H=10.3m~24.7m							
신설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면적(m²)	343	서울시 고시 제2023-540호 (‘23.12.07.)	을지로3가역 7번 출입구 (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)
					길이(m)	28.6		
					폭(m)	8.1, 12.7		
					높이(m)	11~29.6		
세부 사항	• 입체적 결정범위(해수면 기준) - 지상부 : A=295.5m², H=25.0m~29.6m - 지하부 : A=281.4m², H=11.0m~25.0m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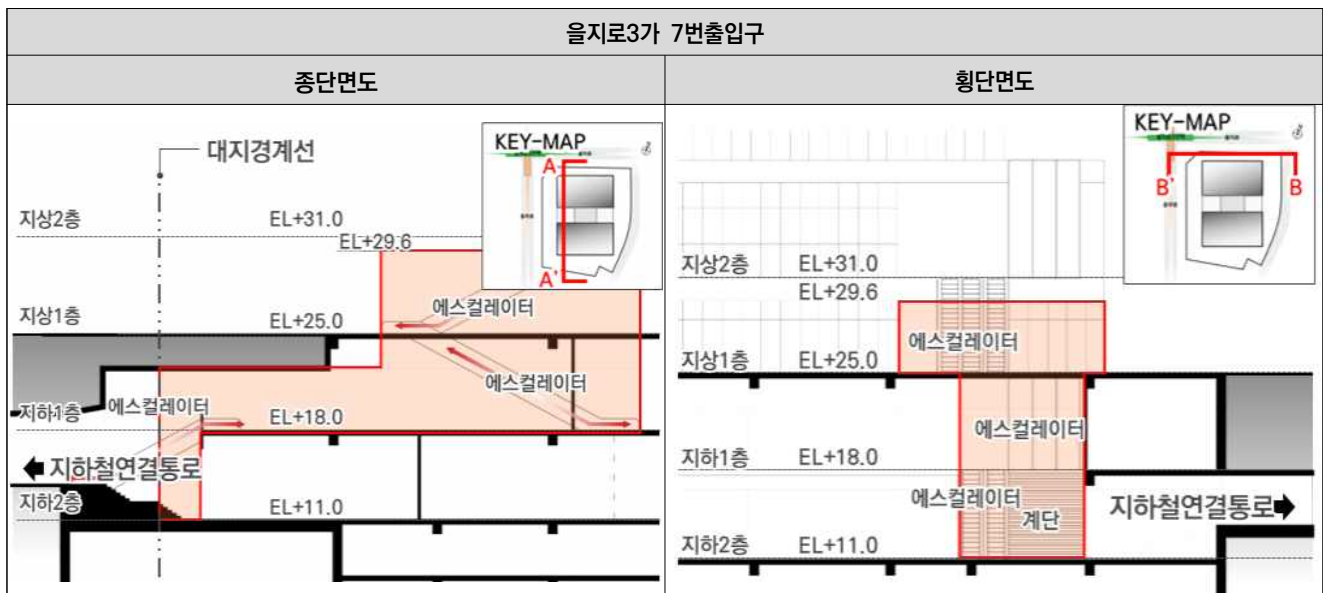
-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- 도시철도 시설 범위 : 493.2㎡ - 입체적 결정 범위 변경 - 면적 : 343㎡ - 길이 : 28.6m - 폭 : 8.1m, 12.7m - 높이 : 11~29.6m	을지로3가역 7번 출입구 대지 내 이설을 위한 입체적 결정

▶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) 평면도



▶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) 단면도



- 이하여백 -

3)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

(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

구역명	획지	면적 (㎡)		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세운6-1-1	획지1	-	증) 5,214.3	5,214.3	사업대지

(2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

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

구분	용도	계획내용	비고
획지1	지정용도	• 업무(오피스텔 제외)	• 벤처집적시설 1,500㎡ 이상 • 비주거 지상연면적 50% 이상 • 개방형 녹지 및 도로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
	허용용도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-
	불허용도	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	..

㉡ 건폐율

구분	계획내용	비고
획지1	60% 이하	중심상업지역

㉢ 용적률

구분	계획내용			비고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
획지1	600% 이하	1,000.0% 이하	1,522.0% 이하	중심상업지역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항목		완화요건	산정방식	적용량	비고
초록거점 조성	녹지생태공간	• 개방형녹지 의무 초과시(대지면적 30%이상) - 기준용적률 × (의무확보 초과면적 ÷ 대지면적) × 2.0 • 개방형녹지 2,470.4㎡, 47.38% 계획	정률 2.0 최대 200%	200%	-
	지구통합관리운영	• 사업시행인가 전, 지구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협약 완료시	정량 20%	20%	-
활력거점 조성	상가세입자 대책	• 대체영업장 확보시(재수용비율 20%이상)	정량 30%	30%	의무
	도시경제활성화용도	•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시(의무 1,500㎡제외) - 기준용적률 × (조성면적 ÷ 대지면적) × 0.4 • 총 1,973㎡(전용) 계획	정률 0.4 최대 100%	21.8%	-
문화거점 조성	공익시설	• 창조교류플랫폼 도입시 - 기준용적률 × (조성면적 ÷ 대지면적) × 0.2 • 총 1,615.3㎡(전용) 계획	정률 0.2 최대 50%	37.2%	-
	친환경	•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%이상 추가 설치시	정량 20%	20%	-
일반사항	신재생에너지	•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%이상 추가 설치시	정률 2.0 최대 100%	78.9%	-
	가로지장물 이전/지중화	• 지하철 출입구 이전시			
합계			407.9% (400% 적용)		

※ "26년 9월 18일 이후부터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항목에서 제외 예정임에 따라(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'26.8.5.) 추후 변경된 기준 반영하여 확정함."

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구 분		인센티브 산식	완화량	
기본시설	토지 (도로, 공원)	• 허용용적률 $\times 1.3 \times$ 가중치 $\times \alpha$ 토지 (가중치 = 부지용적률 비율) (α 토지 = 부담면적/대지면적)	-	-
추가부담 (건축물 기부채납)	입체보행시설	• 허용용적률 $\times 1.2 \times \alpha$ 건축물 (α 건축물 = 환산부지/대지면적)	• 1,000% $\times 1.2 \times 0.0627$ ※ α 건축물: $327.4\text{m}^2 \div 5,214.3\text{m}^2$	75.3%
	세운상가매입		• 1,000% $\times 1.2 \times 0.2723$ ※ α 건축물: $1,420.0\text{m}^2 \div 5,214.3\text{m}^2$	326.8%
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		• 허용용적률 $\times 12\%$ (4등급)	120%	
합 계				522.1% (522.0% 적용)

㉞ 높이

■ 기준높이 : 90m 이하

■ 완화높이 : 96m 이하

구분	인센티브 산식	완화량	
개방형녹지확보	• [적정건폐율 $50\% \times$ (기준높이 $+20\text{m}$) $\div$ (80% -개방형녹지율)]-기준높이	• [50% $\times$ (90m $+20\text{m}$)] $\div$ (80% -47.38%) -90m	78m
공공용지 제공	• 기준높이 $\times$ (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$\div$ 당초의 대지면적)	• 90m $\times$ (1,420 $\text{m}^2 \div 6,971.25\text{m}^2$)=18m	18m
합계		96m	

■ 개발가능높이 : 기준높이 + 완화높이 = 186.0m

(3)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• 을지로, 충무로변 5m	-

(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

㉠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공개공지	대상지 북동측 개방형녹지 내	• 을지로변 측으로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 배치 - 면적 : 527.29 m^2 (대지면적의 10%이상 확보)	약 10.11%
전면공지	을지로, 충무로변	•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•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	-

㉔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개방형 녹지	대상지 전면 (차량출입구, DA등 제외)	- 조성계획 : 대상지 동, 서, 남, 북측 녹지 조성 - 면적 : 2,407.4㎡(대지면적의 40%이상 확보) - 유지관리 :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(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에 적합하게 운영·관리)	결정도 참고

※ 개방형녹지는 「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」(‘25.06) 준용

※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,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(공개공지)형상 등은 조정 가능

㉕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차량출입 불허구간	을지로, 충무로변	간선도로변의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	결정도 참고

16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(변경)

1) 용도지역

- 6-1-1구역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·복합개발 통한 을지로 도심업무중심축 기능 강화
 - 대규모 업무시설 및 벤처·창업 지원공간 도입
- 세운재정비촉진계획상 중심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기준 준수
 - 을지로변 중심상업지역 상향가능지역 해당
 - 비주거용도비율 50%이상, 벤처시설 1,500㎡이상, 업무지원시설(회의시설) 도입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5,286.6	-	5,286.6	100.0	-
중심상업지역	-	증)5,214.3	5,214.3	98.6	-
일반상업지역	5,286.6	감)5,214.3	72.3	1.4	도로

※ 금회 촉진계획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-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결정(변경) 사유
		기정	변경		
-	중구 을지로3가 291-45일대	일반상업지역	중심상업지역	5,214.3	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(‘22)에 따른 녹지생태공간 유도 및 서울도심기본계획(‘23)에 따른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고밀·복합개발 통한 을지로 도심업무중심축 기능 강화

2) 용도지구(변경없음)

나.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)

1) 교통시설(변경)

(1)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2~25 (3m)	집산 도로	1,870 (982)	와룡동 5-14	필동1가 40	일반 도로	-	서울시공고 제2001-646호 (‘01.8.6.)	2,6-1,6-2구역변 3m 도로확폭
변경	중로	1	1	22~25	집산 도로	1,870 (982)	와룡동 5-14	필동1가 40	일반 도로	-	서울시공고 제2001-646호 (‘01.8.6.)	충무로변 도로계획 조정

※ 금회 촉진계획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※ ()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

-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1	중로1-1	• 충무로변 도로계획 조정 (B=25→22m, 3m 축소)	• 충무로변 도로 폭원 축소

■ 지하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3	A	4~26 (4~26)	특수 도로	2,780 (464)	시청역 (을지로 3가역)	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(을지로 4가역)	지하공공 보도시설	-	‘83.9.16	-시청광장~을지로 지하상가 (을지스타몰 3구역) 대로2-3 중복결정(A=8,445.3m²) -중로3-1 중복결정 (A=83.7m²) -입체적 결정(A=286.6m²)
변경	대로	3	A	4~26 (4~26)	특수 도로	2,780 (464)	시청역 (을지로 3가역)	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(을지로 4가역)	지하공공 보도시설	-	‘83.9.16	-시청광장~을지로지하상가 (을지스타몰 3구역) 대로2-3 중복결정(A=8,798.8m²) -중로3-1 중복결정 (A=83.7m²) -입체적 결정(A=286.6m²)

※ 금회 촉진계획 변경 구역 외 게재 생략

- 변경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A	대로 3-A	• 시청광장~을지로 지하상가대로2-3 중복결정 면적 증가 - A=8,445.3m²→8,798.8m²(증)353.5m²)	• 지하철2호선, 을지로지하상가 등 주변 시설과 연결되는 지하공간 개선/확대

(2) 철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903.56 (595.8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255.86 (948.1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■ 입체적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입체적 결정규모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구분	규모		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면적(㎡)	329.6	서울시 고시 제2023-540호 (‘23.12.07.)	을지로3가역 6번 출입구
					길이(m)	43.3		
					폭(m)	18.9		
					높이(m)	10.3~29.4		
세부 사항	- 입체적 결정범위(해수면 기준) - 지상부 : A=152.0㎡, H=24.7m~29.4m - 지하부 : A=219.4㎡, H=10.3m~24.7m							
신설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면적(㎡)	343	서울시 고시 제2023-540호 (‘23.12.07.)	을지로3가역 7번 출입구
					길이(m)	28.6		
					폭(m)	8.1, 12.7		
					높이(m)	11~29.6		
세부 사항	- 입체적 결정범위(해수면 기준) - 지상부 : A=295.5㎡, H=25.0m~29.6m - 지하부 : A=281.4㎡, H=11.0m~25.0m							

-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- 도시철도 시설 범위 : 493.2㎡ - 입체적 결정 범위 변경 - 면적 : 343㎡ - 길이 : 28.6m - 폭 : 8.1m, 12.7m - 높이 : 11~29.6m	을지로3가역 7번 출입구 대지 내 이설을 위한 입체적 결정

(3) 주차장(변경없음)

2) 공간시설(변경없음)

3) 공공·체육문화시설(변경없음)

Ⅲ.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

- 2026년 제6차('26.06.30.)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: 수정가결

연번	의견	비고
1	• 북측 근린생활시설의 이면부 보행통로(3m)를 개방형 녹지·공개공지와 연계함으로써 가로활성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	-
2	• 동측 이면도로 임시도로 설치 구간의 개방형녹지 보행공간에 대한 상세계획 (장·단기안) 제시 ▶ (단기안) 임시도로 설치시 / (장기안) 개방형 녹지 복구시	-
3	• 기존상가 세입자를 위한 대체영업장의 운영 상세계획 제시	-
4	• 교통처리계획 동측 이면도로(C-C´) 길어깨 부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 역주행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므로 교통처리계획을 일방통행 방안으로 검토	-
5	• 개방형 녹지는 향후 통합심의회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규모 및 위치 등에 대하여 검토	-

※ 세부내용은 결정도서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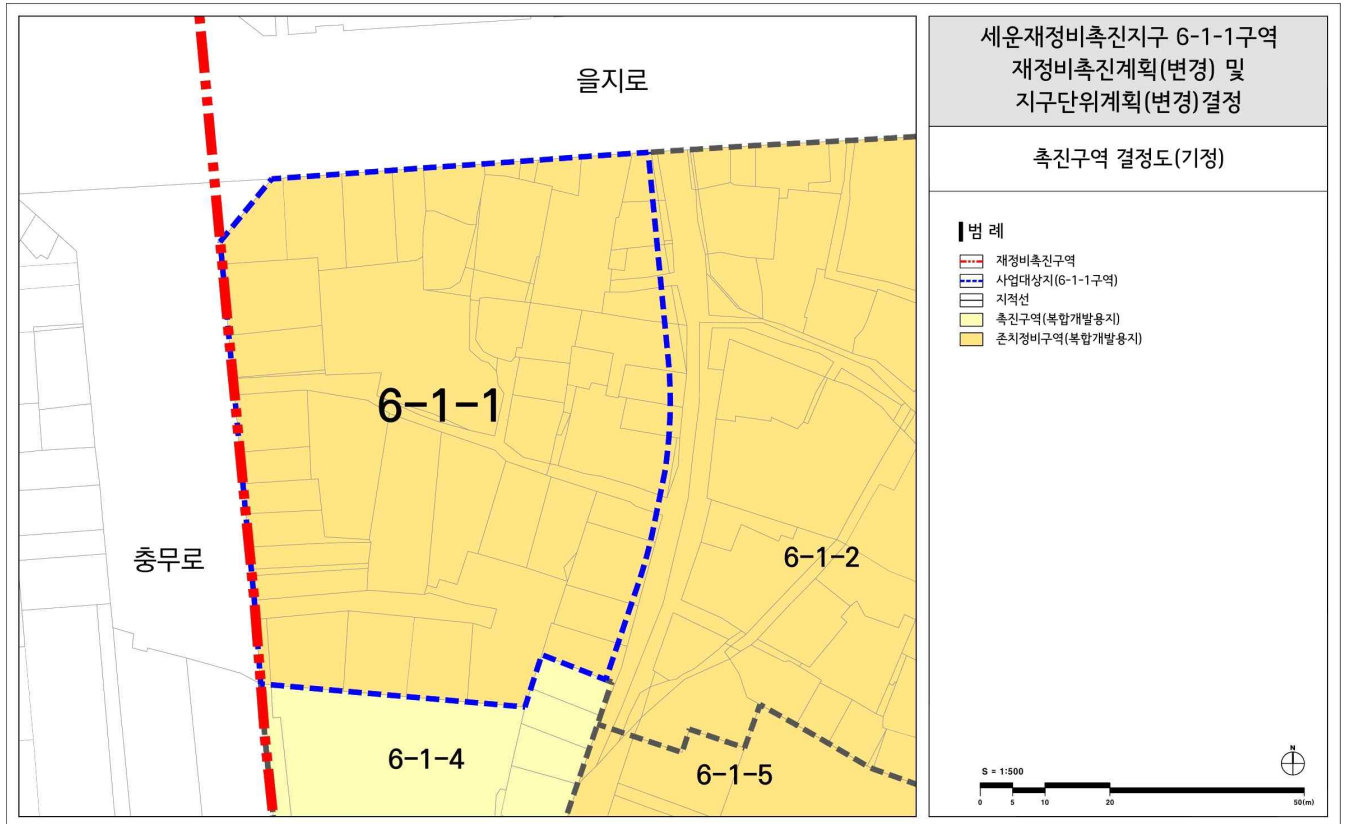
Ⅳ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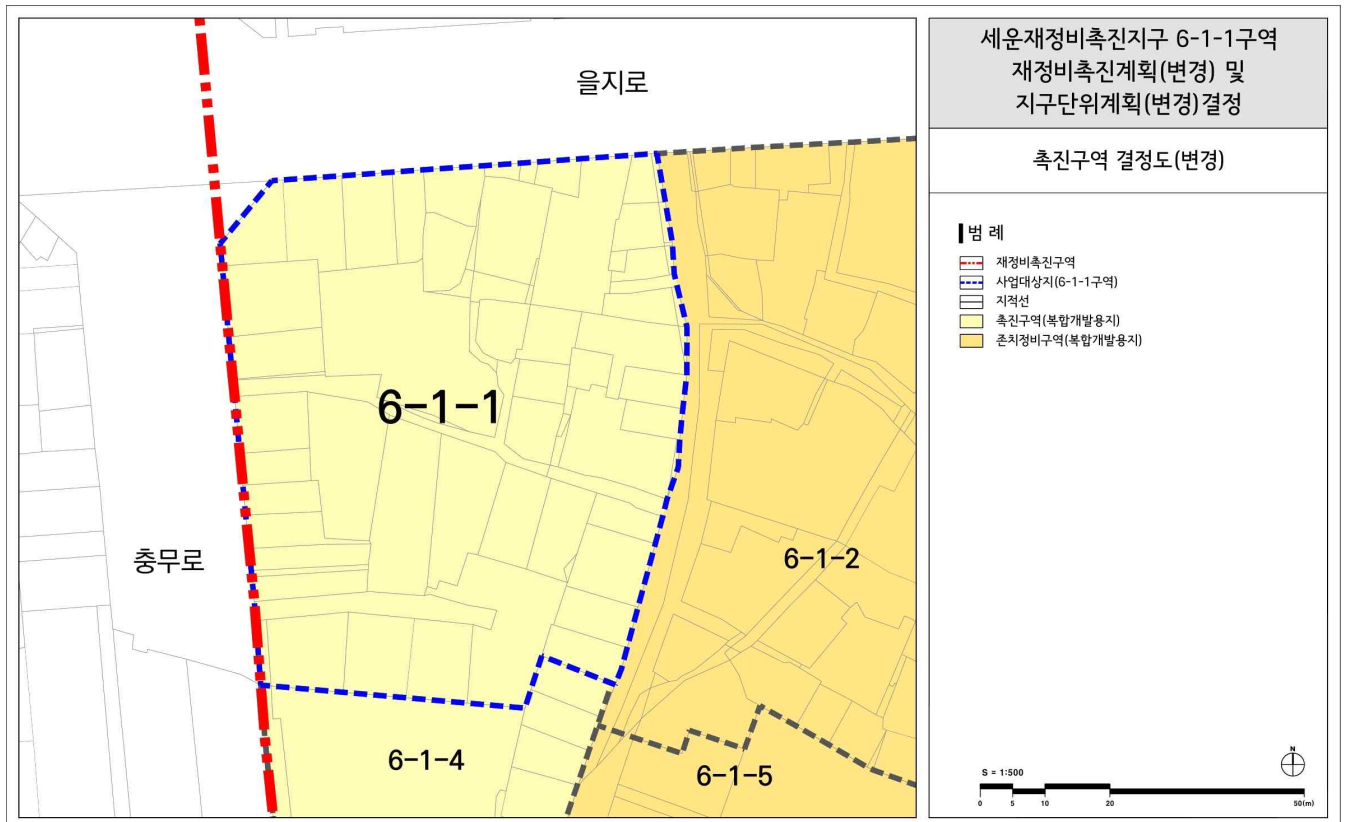
Ⅴ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(02-2133-4649)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(02-3396-5756)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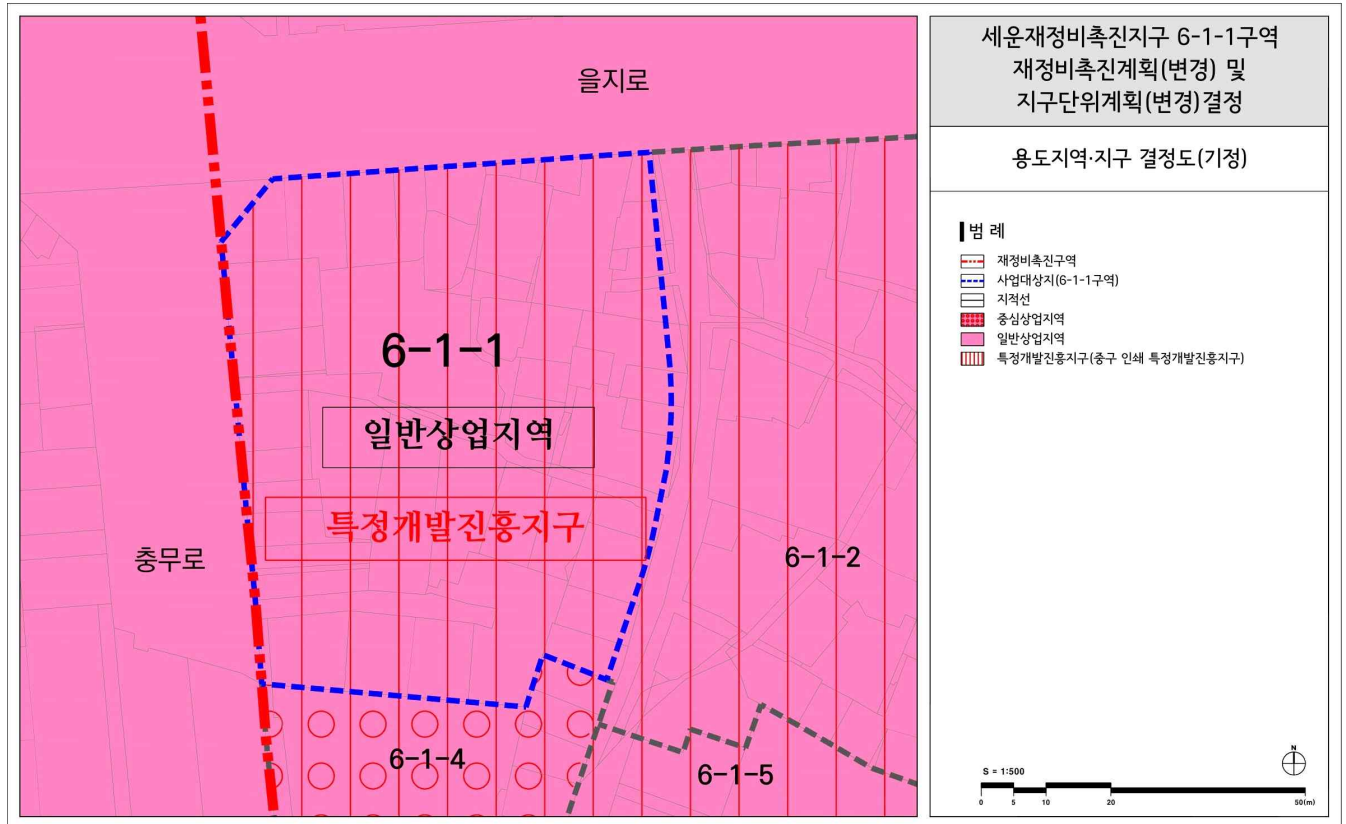
| 촉진구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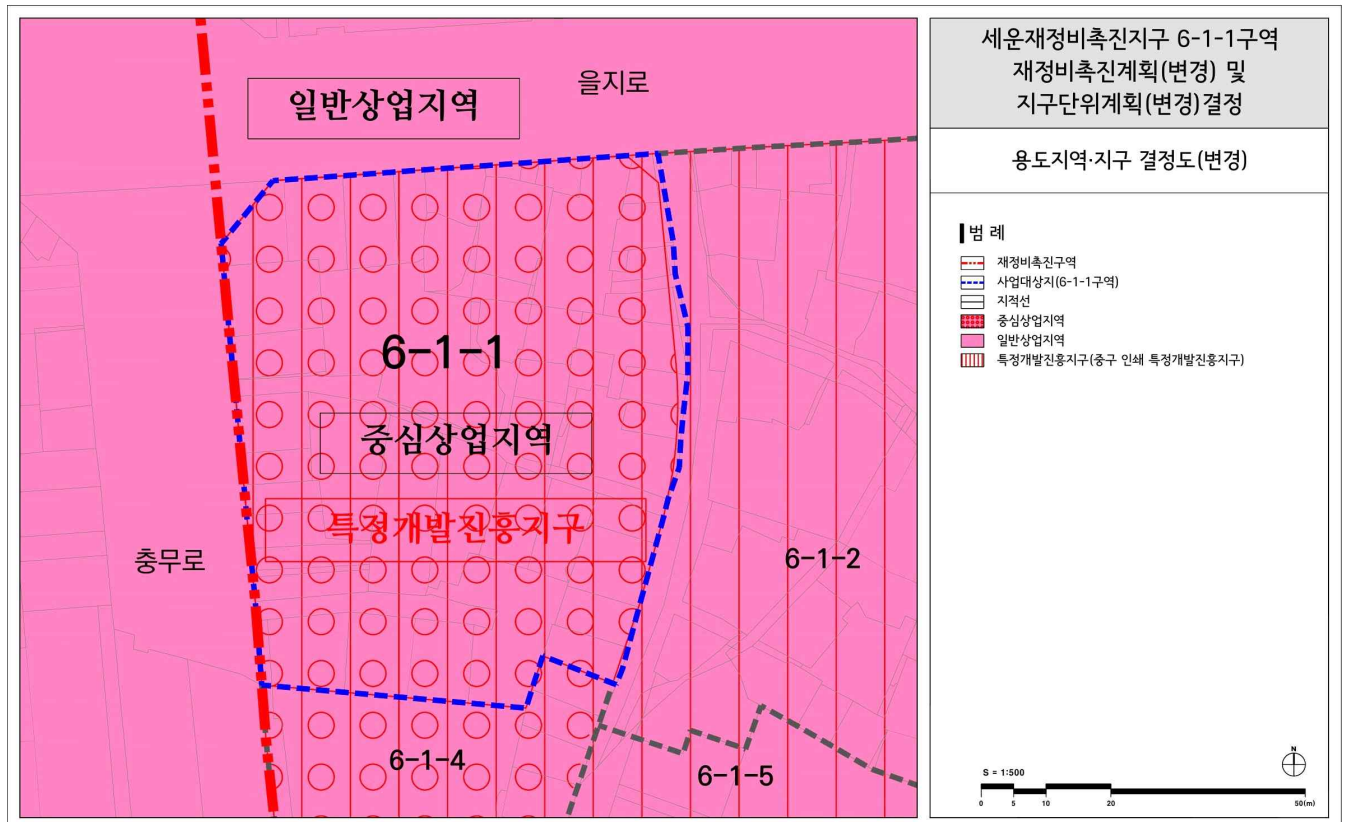
| 촉진구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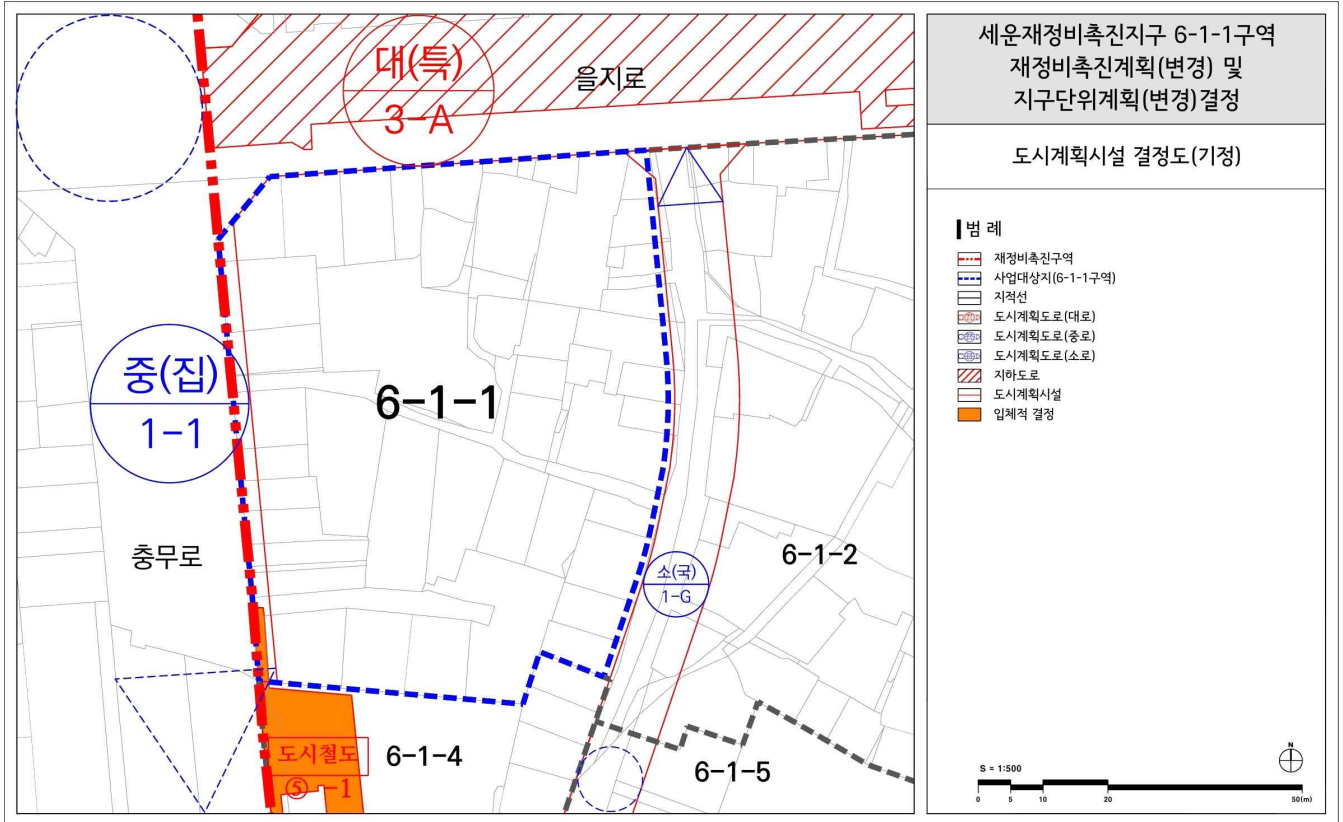
|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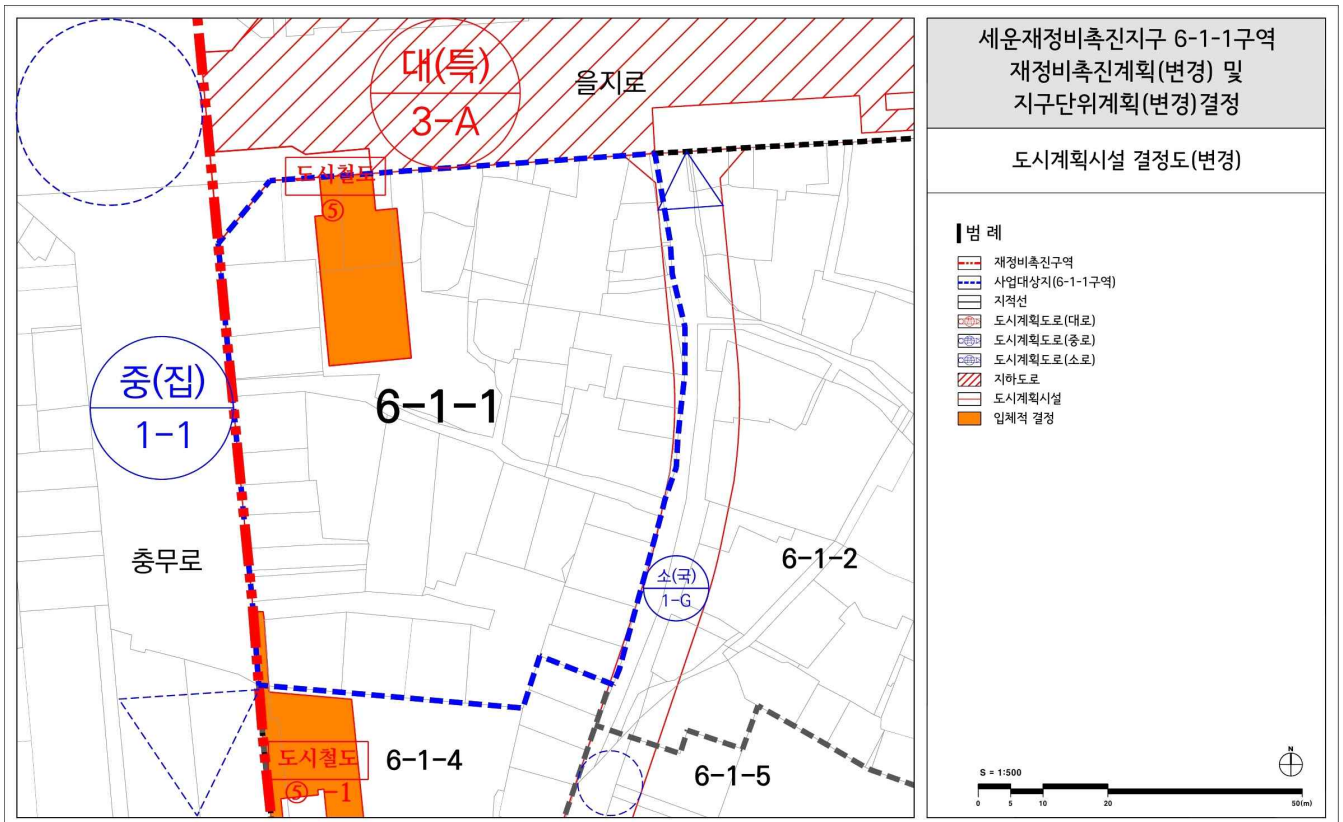
|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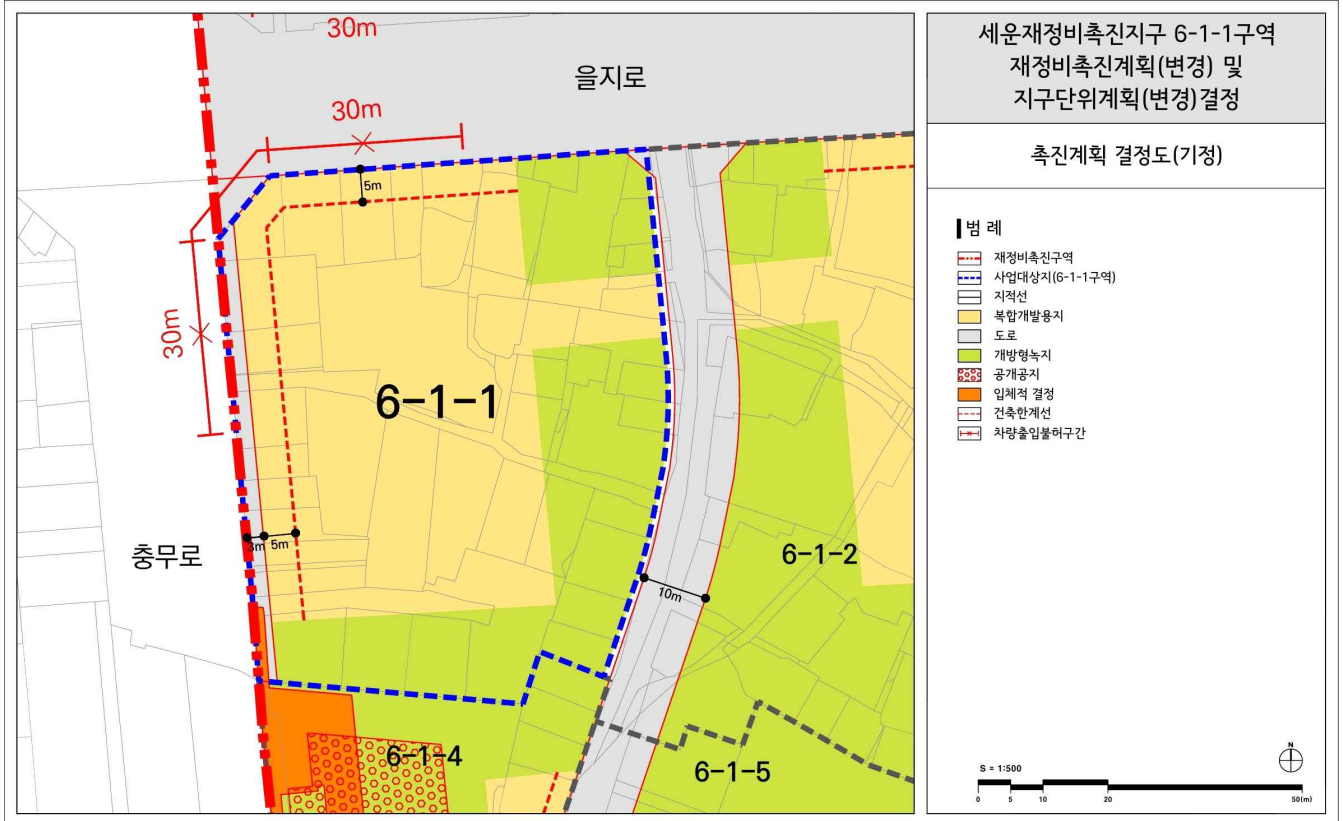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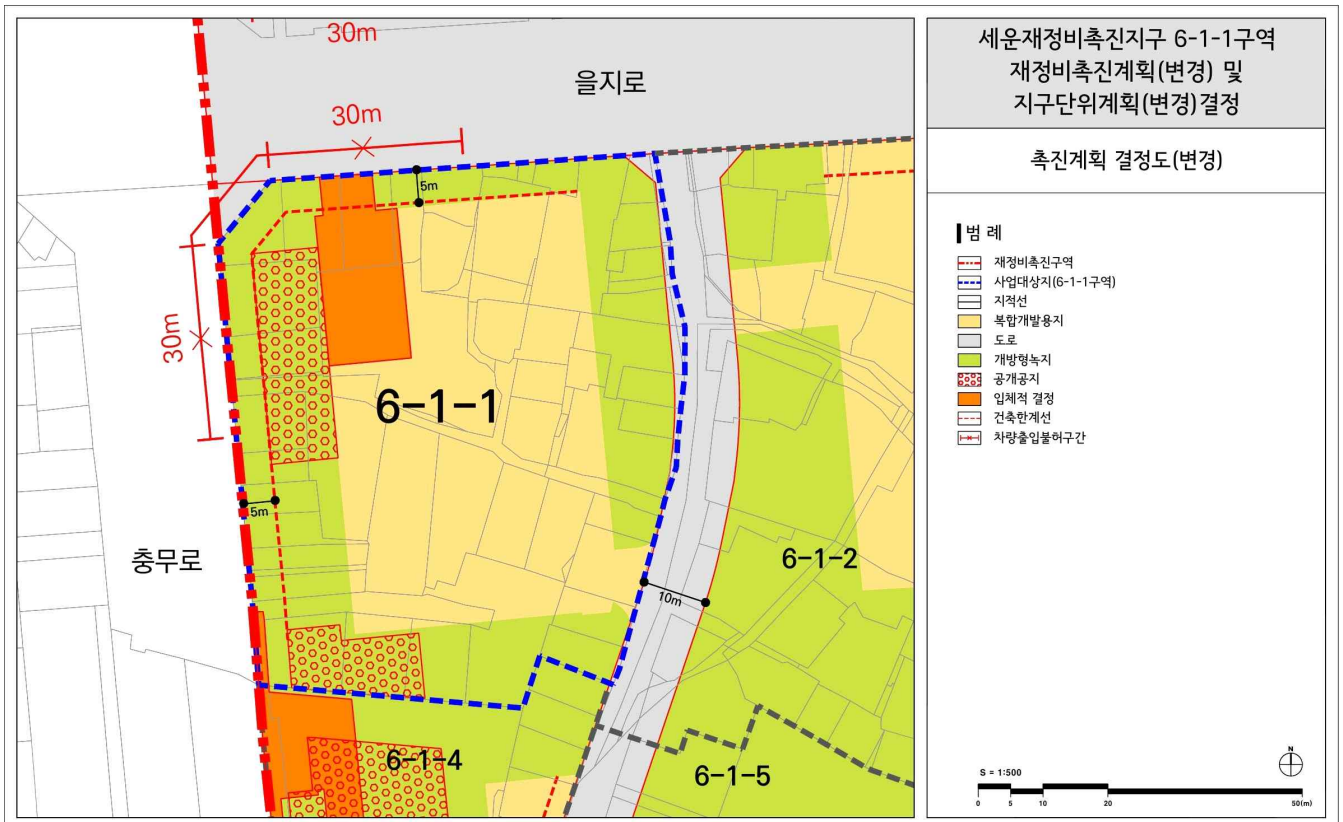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

■ 축진계획 결정도(기정)



■ 축진계획 결정도(변경)



|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신설)



|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신설)

